

자유전공학부 운영에 관한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9.12.27		16		
2	2021.1.18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자유전공학부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전공학부의 원활한 운영과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(이하 “자유전공학부생” 라 한다)의 효과적인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취득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유전공의 정의, 전공 선택 및 졸업에 있어서의 준칙주의 등) ① “자유전공” 이라 함은 자유전공학부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.

② 자유전공학부생은 주전공 신청을 위해 개별 학부(과)를 선택하여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장의 승인 하에 자유전공학부에 소속을 둘 수 있으며, 학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학위취득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다.

③ 자유전공학부생은 개별 학부(과)의 주전공, 복수전공, 부전공, 융합/연계전공의 이수에 있어서 학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 이외에 다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규정은 자유전공학부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.

② 자유전공학부생 중 개별 학부(과)로 진입한 학생은 진입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,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 개별 학부(과)의 내규에 따른다.

제2장 학부 운영

제4조(학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부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학부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부 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2. 학부에 필요한 강의의 개설 요청에 관한 사항
3. 지도교수의 선정 및 배정에 관한 사항
4. 학부 개선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
5. 교과목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학부 운영·관리·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

제5조(학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) ① 학부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자유전공학부생의 지원 선호도, 개별 학부(과)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부(과)별 전공지도교수 등을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
③ 학부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전공지도교수의 역할) 전공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전공 탐색 및 수강 지도에 관한 사항
2. 주전공 신청 개별 학부(과) 선택에 관한 사항
3. 졸업에 필요한 이수 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
4. 졸업 후 진로 지도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과목 이수에 관한 제반사항

제7조(교과목 편성) ① 자유전공학부는 전공탐색을 위한 교과목 등 별도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개설할 수 있다.

② 자유전공학부는 주전공 관련 학부(과)에 강좌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장 전공 선택 및 지도교수의 배정

제8조 (희망 학부(과) 신청 및 전공지도교수 배정) ① 자유전공학부생은 입학년도 초 ‘희망전공 학부(과)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.)’를 자유전공학부에 제출하여 자신이 전공하기를 희망하는 학부(과)를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27>

② 신청서를 접수하면 학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지도교수를 배정한다.

제9조(주전공 학부(과) 선택 등) ① 자유전공학부생은 2학년 진급 전 주전공 학부(과)를 선택하여(항공운항학과 제외)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9.12.27>

② 자유전공학부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‘주전공 학부(과)신청서’를 전공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유전공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교무처를 통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12.27>

③ 자유전공학부생이 주전공 학부(과)에 진입한 경우 그 소속은 해당 학부(과)로 변경된다. 단, 소속 변경은 전과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19.12.27>

④ 자유전공학부생이 주전공 학부(과)에 진입한 경우 해당 학부(과)장은 신입생에게 학생상담, 수강신청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. <신설 2019.12.27>

제10조(학부(과) 미진입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부생의 전공 선택) ① 자유전공학부 소속으로 졸업하기를 원하는 학부생은 복수전공, 부전공 또는 연계·융합전공 중에서 2개 전공 이상을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부전공만 2개 이상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12.27>

② 2학년 진급 전 주전공 학부(과)를 선택하지 않은 자유전공학부생은 3학년 또는 4학년 진급 전 주전공 학부(과)를 선택할 수 있다.

③ 학부생이 자유전공학부 소속으로 학업을 계속 이수하는 경우 자유전공학부장은 학업계획 접수, 학생상담 등을 통해 학부생의 학업계획을 확인하고 학업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. 단, 외국인학생의 경우 학사관리 및 외국인유학생 관리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신설 2019.12.27., 개정 2021.1.18.>

제11조 (소속·전공 표기) 자유전공학부 소속으로 졸업하는 학부생에게는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의5,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학위증, 학적부 및 증명서에 소속과 전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.

1. 소속 학부(과)는 자유전공학부로 표기한다.
2. 복수전공, 부전공 또는 연계·융합전공의 이수를 마치면 해당란에 학위명(부전공인 경우는 제외한다)과 전공명을 각각 표기한다.

[본조신설 2019.12.27]

제12조 (기타)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자유전공학부 운영내규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12.27]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 - ② (주전공 학부(과) 진입제한 및 잔류학생 전공이수 의무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제9조 제1항에 따른 항공운항학과 진입제한과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계·융합전공 등 2개 전공 이상 이수 의무는 202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